

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❖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및 불법광고물 예방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I 운용계획 변경사유

- 행정안전부 보조금 교부 지급
 - 옥외광고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하여 공모사업 및 전국 시·군 균등 배분
 - 일반 현수막 지정게시대,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목적으로 명시되어 지급

II 운용계획 변경내용

- 일반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
 - 위 치 : 대가야읍 일원
 - 예 산 액 : 20,000천원(공모)
 - 내 용 : 5단 자동게시대 2기
 -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지원사업
 - 위 치 : 대가야읍 및 성산면 또는 다산면(계획)
 - 예 산 액 : 24,682천원(균등배분)
 - 내 용 : 5단 자동게시대 2기
- ※ 정치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

II 운용계획 변경(안)

(단위:천원)

'22년도 수입계획				'22년도 지출계획				비고
항 목	변 경	당 초	증 감	항 목	변 경	당 초	증 감	
합 계	115,033	70,351	44,682	합 계	115,033	70,351	44,682	
· 전입금	7,702	7,702	44,682	· 비용자성사업비	44,682	-	44,682	
· 보조금	44,682	-		· 예치금	70,351	70,351		
· 예치금회수	62,149	62,149						
· 이자수입	500	500						